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53 발의연월일: 2022. 10. 27.

발 의 자:최인호·조승래·김경협

이학영 • 민홍철 • 김두관

허 영 · 김병욱 · 김민철

허종식 • 전재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(사업인정 고시)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수용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(제8조제2항제3호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말한다)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「공항시설법」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(裁決)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	제8조(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
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u><단</u>	
<u>서 신설></u>	<u>다만, 제3호의 신공항건설</u>
	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
	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
	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토
	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
	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토지등의 수용에 관한
	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
	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할
	토지등의 세목(제8조제2항제3
	호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
	장애물 제한표면에 편입되는
	토지등의 세목을 말한다)을 고
	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
	서 준용되는 「공항시설법」
	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

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 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 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(裁決)의 신청 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 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 다.